

## 18.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6,664호 1999. 12. 31

### 개 정 이 유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고, 양도소득세의 결정방식이 정부부과제도에서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분리과세가 가능한 장기채권의 범위, 양도소득세의 불성실신고에 대한 보완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 가.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 1호를 소유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2호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8조의2).
- 나. 저축성보험의 경우 종전에는 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다른 금융상품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시행되는 2001년 1월 1일부터는 7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5조제1항 및 부칙 제1조)
- 다. 법인세를 거의 부담하지 아니하는 증권투자회사·자산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투자자가 배당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세액공제를 하

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7조의2제1항)

- 라.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양도시기가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이고,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시기가 2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내이고,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서민의 세부담을 덜어 줌(영 제155조제4항 및 제5항).
- 마. 종전에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 이상 소유하는 자가 3년동안 1퍼센트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장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3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수량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함(영 제157조제4항)
- 바.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168조제5호)
- 사.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시행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함(영 제187조제1항)
- 아. 고급주택에 대한 실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부동산양도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시에는 매매계약서의 사본과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영 제22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동조제9항)